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0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기덕, 김인제,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이민옥,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스쿨존 내 보행안전기기(차량용 방호벽 및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정지원 사항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5제1항 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15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최기찬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15.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5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제7호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3년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7조의5제7호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전환사업)	29,494,684

자료: 2023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1] 2023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전환사업)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용시설 주변 도로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 과속단속카메라, 노란 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 설치
- 총사업비 : 29,494,684천원